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환경노동위원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 변경 및 사업범위 확대〉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543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총괄	3
2. 조문별 검토의견	6
(1) 공사의 명칭 및 법률 제명 변경	6
(2) 공사의 사업영역 확대	10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4일 김소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 안 자 : 김소회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0. 4.

(3) 회 부 일 : 2024. 10.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도 수도권매립지 관리 외에 폐기물의 자원화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이에 대해 기존의 기관명은 매립에서 자원화 및 에너지화로 변화하는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정서상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매립지라는 명칭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공사의 업무 수행에 제약을 초래하여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그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사가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활용한 국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원순환 분야의 해외 진출기회 확보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공사의 해외사업 추진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공익 및 설립목적상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며, 국외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9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사법”)¹⁾에 따라 2000년 7월 설립되어, 인천 서구에 소재한 수도권매립지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2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폐기물이 최초 반입된 이래 제1매립장 및 제2매립장은 사용이 종료되었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인천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의 조치를 전제로, ① 3-1 매립장의 사용, ② 대체 매립지 조성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자 합의(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15.6월)에 따라 2018년 9월 제3-1매립장 사용을 개시하였음.

< 4자 합의 주요내용(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 >

- ① 선제적 조치 : △아라뱃길부지 매각대금 1,659억원 인천 양도, △매립지 반입수수료 50% 가산 및 인천 지원('16~23년, 5,573억원), △공유수면매립면허권 양도(양도가치 1.3조원)
- ② 대체매립지 미확보시 :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 추가 사용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립지 규모 및 매립기간]

구분	부지면적(만㎡)	매립면적(만㎡)	매립용량(만톤)	매립기간
제1매립장	409	251	6,425	1992.2~2000.10
제2매립장	378	262	8,018	2000.10~2018.10
제3매립장(1단계)	103	83	1,819	2018.9~

자료 : 환경부

제3-1매립장은 총 용량 1,819만 톤 가운데 2024년 11월 말 기준 62%를 사용하고 있으며, 4자 합의 중 ‘대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²⁾를 추진하고 있으나, '21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실시한 3차례의 공모에도 참여한 지자체는 없었음.

한편, 공사는 수도권의 폐기물 매립 외에 폐기물의 자원화시설, 오염방지시설, 공원·체육·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³⁾에 따

2) * (1·2차 공모, '21) 민선7기 인천시의 공모관련 4자협의체 이탈('25년 매립지 종료 선언('20.10) 및 자체매립지 조성 추진) 속에서 1·2차 공모('21) ⇒ 응모 無

* (3차 공모, '24.3~6) 민선8기 4자 협의체 복원('23.2, 4자 기관장 회동) 및 4자 합의에 따라 공모조건을 개선하여 3차 공모('24.3~6) ⇒ 응모 無

* (4차 공모 협의중) 4차 공모 추진 합의('24.6, 4자 국장급) 및 응모문턱은 낮추고 인센티브를 확대방향으로 공모조건 등 실무논의 중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① 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 온실가스 예상감축량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⑦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기준·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방법 및 검증 절차, 제3항에 따른 신고 방법, 제4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사전 승인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업무의 위탁)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게 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전 승인 절차를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 업무,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축량 보고·신고 절차를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 업무, 제15조에 따른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개정안은 매립지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입지지역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그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폐기물 처리 사업 수행의 역할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해외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는 등 역할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는 인천시가 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는 등 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에 인천시는 개정안에서 공사의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동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률 개정 전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종료와 공사 이관사항 등을 망라한 4자간 재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 조문별 검토의견

(1) 공사의 명칭 및 법률 제명 변경

개정안은 공사의 명칭을 현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률 제명도 현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도권자원순환공사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제명, 안 제1조·제5조·제7조 및 제11조).

현행	개정안
<u>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u>	<u>수도권자원순환공사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u>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u> 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수도권자원순환공사</u> ----- ----- ----- ----- ----- ----- -----
제5조(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① 제7조에 따른 <u>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u> 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5조(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① ----- <u>수도권자원순환공사</u> ----- ----- ----- ----- ----- ----- -----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② 제7조에 따른 <u>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u>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u>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u>의 설립 및 법인격) ①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u>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u>(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생략) 제11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u>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u>수도권자원순환공사</u>----- -----. 제7조(<u>수도권자원순환공사</u>----- -----) ① ----- ----- <u>수도권자원순환공사</u>-----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 ----- <u>수도권자원순환공사</u> ----- -----.
---	---

‘자원순환’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⁴⁾), 매립뿐 아니라 폐기물의 감량이나 재활용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임.

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현제도 수도권매립지 관리 외에 현행법 제19조제1항제3호⁵⁾

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따라 음폐수바이오가스화, 슬러지 건조연료화 등 폐기물의 자원
화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공사의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구 분		매립시설	슬러지자원화시설		
시설규모 (시설개요)		○ 제1매립장('92.2 ~ '00.10) -면적/규모 : 409만m ² /6,467만m ³ (약 6,425만 톤) -사업비 : 기반시설 327억 원, 매립작업 3,005억 원 -관리현황 : 드림파크CC골프장	○ 1단계 -규모 : 1000톤(800톤)/일* * 대수선공사('17)이후 처리량 감소 -사업비 : 398억 원(국비 29%, 지방비 71%)		
		○ 제2매립장('00.10 ~ '18.10) -면적/규모 : 378만m ² /8,804만m ³ (약 8,018만 톤) -사업비 : 기반시설 3,374억, 매립작업 4,488억 원 -관리현황 : 법적 사후관리 전 시설물 유지관리 중	○ 2단계 -규모 : 1,000톤/일(100톤/일 X 10계열) -사업비 : 822억 원(국비 30%, 지방비 70%)		
		○ 제3-1매립장('18.9 ~ 진행 중) -면적/규모 : 1,033천m ² /2,000만m ³ (약 1,800만 톤) -사업비 : 1,365억 원(공사감리·설계 1,258, 주민편익시설 107) -매립진행 : 866만 톤(47.6%)*, *'21년 기준	○ 3단계 -규모 : 768톤/일(192톤/일 X 4계열) -사업비 : 1,272억 원(국비 64%, 지방비 36%)		
처리대상		수도권 3개 시·도(66개 시·군·구) 중 64개 시·군·구 *미반입지역 : 경기도 연천군, 인천시 옹진군	수도권지역 발생 하수슬러지 * (3단계) 인천시, 경기도 9개 시		
반 입 량	구분	제 3-1매립장(만 톤)	1단계(천 톤)	2단계(천 톤)	3단계(천 톤)
	평균	309.0	125.2	187.5	88.3
	2019	336.8	180.1	245.7	-
	2020	299.5	119.3	165.8	93.8
	2021	290.8	76.2	151.0	82.8
처 리 량	평균	259.2	125.3	187.2	82.1
	2019	287.6	180.4	247.1	-
	2020	249.8	119.6	167.3	91.6
	2021	240.4	75.7	147.3	72.6

구 분		광역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SRF시설
시설규모 (시설개요)		-규모 : 500톤/일 -사업기간 : '10.9 ~ '13.8 -사업비 : 442억 원(국비 29%, 지방비 71%)	-규모 : 200톤/일 -사업기간 : '07.11 ~ '10.4 -사업비 : 254억 원(국비 50%, 공사 50%)
처리대상		3개 시·도 음폐수 (서울 200톤, 인천 100톤, 경기 200톤)	서울시 관악구, 금천구, 용산구, 영등포구 재활용 잔재물
반입량	구분	(천 톤)	(천 톤)
	평균	142.4	14.3
	2019	166.5	15.9
	2020	141.7	13.1
	2021	118.8	14.0
처리량	평균	140.9	14.3
	2019	165.9	15.9
	2020	138.2	13.1
	2021	118.7	14.0

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에 개정안은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여 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정서상 “매립지”가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데 따른 부정적 이미지, 신규 업무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갈등 유발 문제 등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공사의 명칭 변경은 공사의 사업영역이 매립지 관리에서 자원순환으로 확장되는 의의가 있는 반면, 수도권매립지 관리라는 공사의 기존 설립목적은 모호해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공사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과거 유사한 개정안⁶⁾에 대해 폐기물 소각 등 민간업체의 반발이 있었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664, 임종성의원안), 2024.5.29. 입기만료 폐기

(2) 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감축시설·공익목적사업 등을 추가하고, 공사의 해외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9. (생략) 10. 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u>문화시설</u> 등의 설치 및 운영 11. · 12.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9조(사업) ①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 ----- ----- <u>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감축시설 -----</u> 11. · 12. (현행과 같음) 13. <u>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u> ② <u>공사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자원순환 촉진과 관련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u>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③ ----- 각 호 및 제2항의 사업을 ----- ----- 각 호 및 제2항의 사업과 -----.
③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 ---- 각 호 및 제2항의----- --.
④ 제2항에 따른 출자나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 -----.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추가(안 제19조제1항제10호)하고 있는데,
이는 공사가 설치 및 운영 가능한 시설의 종류를 「폐기물관리법」 제54조8)에 따른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토지이용 제한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와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폐기물관리법」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저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임.

둘째, ‘공익상 수행에 필요하거나 공사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가(안 제19조제1항제13호)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예기치 못한 쓰레기 대란 등 폐기물의 공공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탄소감축시설과 공익 목적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음에 따라, 금번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과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⁹⁾(’21.12.2) 사례와 마찬가지로 폐기물 소각 등 민간업체의 업역 중복 가능성 문제 제기가 우려되므로 사업 구체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셋째, 개정안은 공사의 사업 범위에 국외 사업을 추가(안 제19조제2항)하고 있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3년 1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¹⁰⁾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9) 임종성의원안, 의안번호 2113664

* 당시 임종성의원안은 社名 변경 외에도 △사업공간 확대(수도권매립지 인천서구, 경기김포 → 수도권 지역 서울·인천·경기)와 △사업대상시설 확대(매립시설 위주 → 재활용,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 전반)를 포함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① 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

으로 지정되어 해외사업 추진 계기가 마련된 만큼, 동법에도 해외 사업의 추진 규정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동법의 제1조 목적 규정은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도록 사업 공간을 국내로 한정¹¹⁾하고 있음에 비추어, 동 해외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경우 해당 규정을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46

라 한다)을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 온실가스 예상감축량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기준·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방법 및 검증 절차, 제3항에 따른 신고 방법, 제4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사전 승인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업무의 위탁)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게 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전 승인 절차를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 업무,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축량 보고·신고 절차를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 업무, 제15조에 따른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1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